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주는 함의

이 성 규*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 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사·정(障·事·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I. 서론

'98년 2월 6일에 도달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두고, IMF의 자금지원이라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산물정도로 파악하는 시각들도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논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이 위기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켜 뉴딜정책과 베버리지보고서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냈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기대는 학문을 포함한 사회 제 부분에 장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 것인지를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면적이다.

본 연구는 '98. 2. 6일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단순히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한 계기적 산물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나가고 있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합의구조가 계기적인지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장, 고려대학교 강사

합의구조가 나아갈 향후의 방향과 속도 및 견고성을 가늠하기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 구조에 대한 생성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정치·경제적 모델들을 한국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둘째, 하나는 한국 사회의 진행과정이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 선진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구조에 대하여 그 조건들을 제시한 도니슨(D.Donnison)의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그간 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용되어온 한국사회에서도 서구의 선진국들이 복지주의를 실현시키면서 축적해온 사회적 합의 모형 같은 것이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위와 같은 조건들을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과학의 한 주장이 현실정책에 부합되는 범위가 넓을 수록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정책의 향후 진행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실천적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일견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는 사회적 합의와 장애인고용이라는 두 주제를 동시에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의지는 바로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의 접점을 찾아내고자 함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장애인문제를 장애인 개인들만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별개로 다루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구조 속에서 분석했다는 점은 연구의 지평을 넓힌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계의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고, 자료의 축적이 미흡하여 탄탄한 자료 분석을 하지 못한 점등은 이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며 사후적 연구과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연성학문인 사회과학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운동사 및 장애인 노동시장과 재활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장애인고용통계를 활용한 분석등의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관련인사 및 정당, 공무원, 노동운동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Ⅱ.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

1. '98.2.6 노사정 합의의 사회정책적 의미

1) 경제위기와 사회적 합의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제위기는 일반적인 미·거시적 경제단위 총체적 침체에 따른 불경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97.11.21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전개되는 한국경제의 타율적이고 과행적인 위축상태를 의미한다. 자금지원 이후 IMF의 요구는 경제정책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실질 GDP 성장을 하향조정, 임금인상억제, 물가상승억제 등 거시경제 운영목표에 대한 수정과 함께 혹자재정과 금융산업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독과점 구조를 줄여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요구와 공급과잉 부문의 조정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외분야로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과 외환보유고 증액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도하였다(IMF : 1997, 노사정위원회 : 1998).

이에 '97.12.26 과 '97.12.27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도부와 연달아 간담회를 개최하여 IMF 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첫 행보를 하였으나 '98.1.14에 가서야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구성에 합의하게 되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진기구의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이후에 10차의 전문위원회, 10차의 기초위원회, 6차의 본회의 등 총 26회의 난상토론과 심야협상 등을 거듭하면서 '98.1.20 제 4 차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공동선언문(I)」이 채택되었고, '98.2.6 고용조정법정비 등 8개 핵심 쟁점사항의 일괄타결 및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공동선언문(II)」가 채택되었다("98.2. 노사정위원회).

'98.2.6 노사정 공동선언문(II)은 실업대책 재원,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교원의 노조허용,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정리해고(고용조정), 근로자 파견제도 실시,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적용 실시 추진 등이 주된 내용이며 가장 난항을 거친 조항이 바로 고용조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고용조정문제는 1차합의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사정에 불참하거나(1.31. 민주노총 불참, 2.2. 한국노총 불참 입장 발표) 강력하게 반발하는 쟁점이 되었다(노사정위원회, 1998). 최종합의를 며칠 앞둔 2.2 양노총의 성명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정부는 최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행되는 …… 무분별한 해고 …… 부당노동 행위 등을 …… 근절하고 …… 국민회의는 국회일정을 빌미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일방적인 운영과 정리해고제/파견제 입법화 강행지도를 즉각 중단하라(한국노총, 1998.2.2)

…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법 / 파견법을 국회에 제출 강행 처리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측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며 …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 이는 '논의, 결정 후 처리','합의제 운영','일괄타결'이라는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원칙에 위배 … 강행한다면 … '제2의 노동법 날치기'….(민주노총 1998.2.2)

후술하겠지만 '96년 말 노동관계법 국회처리에 대항하여 '97년초 재개정합의를 도출시킬만큼 성장한 노동계가 노측의 대량실업을 감수하며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IMF라는 외부압력이 초국가적임을 인정한 것이며(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8), 둘째, IMF 체제하의 위기가 단순히 경제적 위기로 끝나지 않고, 종체적 사회적 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이같은 의지들은 최종합의 직전에 발표된 노동계의 입장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으며, 1·2차 합의문에도 나타나 있다(민주노총 : 1998.2 ; 한국노총 : 1998. 2.5 ; 노사정위원회 : 1998. 1. 20, 1998.2.6).

사회정책논의자들 중에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1929년 대공황극복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뉴딜(New Deal) 정책이 고안되면서 1935년 세계최초로 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가 제정된 미국의 경우와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의 배경이 되었던 2차대전 등을 예시한다(신선풍, 1998 ; 김연명, 1998).

이같은 주장들도 평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뉴딜이후 미국의 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모형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Beveridge 이후의 영국복지도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수정 발전되면서 독특한 형태(일명 제3의 노선)의 합의를 도출시켜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특정한 시기와 국면 속에서의 “돌파적 정책”과 역사적 뿌리를 갖는 “사회적 합의의 형태”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위기 자체에 복지주의가 당연하게 내포되어있는 듯이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2)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적인 이념들을 살펴보면 논자들마다 대체적으로 지향성과 목표점이 비슷하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소폭의 차이가 있다.

슈미터(Schmitter)는 이익의 조정형태로서의 조합주의를 설명하면서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을 대비시켰다. 국가조합주의는 중상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위로부터의 권위적, 정치적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게 된다. 사회조합주의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고,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익단체들의 자율성이 보장된다(Schmitter, 1974 :20-22).

한국에서는 김호진과 이강로가 한국에서의 사회조합주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노동계의 정책 참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슈미터의 분류와 비슷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김호진, 이강로, 1991)

한편 박세일은 위와 같은 양분법이 아닌 3분법을 취하고 있는데 정치적 조합주의, 경제적 조합주의, 국민적 조합주의가 그것이다(박세일, 1991 : 27-30).

정치적조합주의는 노사관계를 이해대립의 조정이 불가능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타파와 사회주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이때의 조합운동은 정치에 예속되며 전위적 정당에 의해 통제된다.

경제적조합주의는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대립의 관계로 보기는 하나 조정이 가능한 비적 대적 관계로 이해한다.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 개선유지, 단체교섭, 입법활동 등을 위하여 실리적으로 또는 정책지향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적조합주의는 노사관계를 이해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이해공동의 관계로 본다. 노동의 목표인 임금인상과 기업의 목표인 생산성향상을 무모순관계로 보기 때문에 노사는 공동협동자(Co-Worker) 혹은 사회적 동반자(Social Partner)로 파악되며,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슈미터의 모델 중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와 김호진·이강로의 사회조합주의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데, 렘브루흐는 이러한 형태의 신조합 주의를 자유주의적 조합주의(Liberal Corporatism)이라고 불렀다(Lehmbruch & Schmitter, 1982 : 16-23).

한국노동운동은 일제 때부터 1961.5.16 이전에는 민족해방, 좌·우대립이라는 정치투쟁에 집착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경제투쟁의 윤곽을 잡아내지 못하였다. 5.16 이후 약간의 경제투쟁력 배양의 기회가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성장)제일주의가 득세하면서 약화되었고 70년대초 유신체제를 맞으면서 노동운동 자체가 위축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같은 추세가 1987.6.29 선언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노동조합이 경제투쟁 수준에서 단체교섭다운 단체교섭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6.29선언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그러나 6.29 이후의 노동운동이 노총을 중심으로한 제도권과 전노협등 재야노동운동 중심의 비제도권으로 양분되어 경제적조합주의에 대한 토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정치적조합주의와 경제적조합주의가 혼재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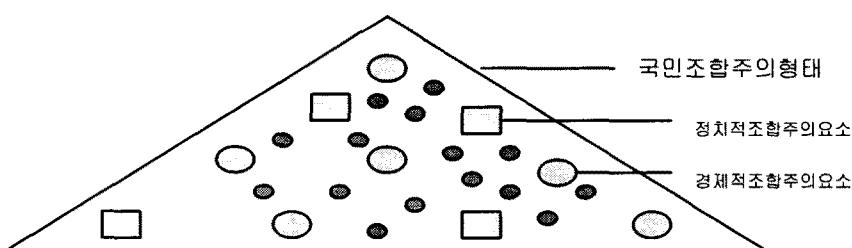
1996.4.24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은 이렇듯 불완전한 경제적조합주의 토대 위에서의 새로운 시도 즉 국민조합주의 내지 사회조합주의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여진다(노사개혁백서 편찬위원회 : 1997 : 68-69).

박세일도 지적하였듯 정치적조합주의, 경제적조합주의, 국민적조합주의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진행될수도 있음을 한국상황은 보여주고 있다(박세일 1991 : 48).

이를 산업의 발전과 연계하면 더욱 명료해진다. 산업화가 초기 - 중기 - 후기로 진행되면서 산업지배형태는 소유주의(주주주권) - 경영주의(경영자주권) - 인간주의(종업원주권) 형태로 진행된다는 통설적 진리를 따라보자면, 조합주의는 정치적조합주의 - 경제적조합주의 - 국민적조합주의라는 대칭적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박세일 1991 : 3-35).

이 구조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산업화는 중·후기로 넘어가는 수준이나 소유관계는 아직도 소유주의적측면이 강하다. 즉 산업화발전단계로 보면, 경제적조합주의와 국민적조합주의적 이지만 소유주의에 맞는 정치주의도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98.2.6 노사정 사

회적 합의는 그전의 노개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적조합주의의 모형과 유사한 지향성을 갖고 이루어졌으며 노사정위원회라는 추진체도 국민적조합주의라는 지향성 속에서 활동의 진폭을 조정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모형은 국민적 조합주의라는 형태가 정치주의와 경제주의라는 질량으로하여 이루어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태 : 형질(形質) 모형

위 그림 2에서 삼각형은 국민조합주의를, 사각형은 정치적 조합주의를, 원형은 경제적 조합주의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모델이 정치주의와 경제주의를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 간결한 형태의 국민주의를 달성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이어야 할 것의 동시화에 의한 복합성과 애매함’을 보여주고 있다. ‘87.6.29 선언 이전의 모습을 상정한다면 정치주의를 나타내는 사각형 속에 삼각형과 원들이 질량을 이루는 형질(形質)모형이 될 것이다.

2. 한국의 사회적 합의모델의 가능성

1)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의와 한국의 가능성

흔히 사회적 합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조합주의라고 불리는 Corporatism에 대하여도 논자들의 주장은 매우 다양하다. 두 가지의 상이한 예를 들어보면, Middlemas는 노사가 극단적으로 접근하면 정권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K. Middleamas, 1979 : 372), Schumitter는 Corporatism이란 각 참여주체가 이익을 대표하는 체제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P. Schumitter, 1974 : 93-94). 여기에 추구하는 정치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 학자들이 각각 상황에 맞도록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조합주의(Corporatism)라는 각각 상이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개념이 자본주의에 기초를 두고도 분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전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

회적합의를 염두에 둔 유사개념으로 파악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복지국가의 이념체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조합주의는 정치행정 체계 등 실천원리를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최경구, 1993 :108-114).

한국에도 유럽식의 사회적 합의모델이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있는데, 김호진·이강로는 국가, 노동, 자본의 관계를 이념과 조직, 형태에 있어서 한국이 국가조합주의로부터 사회조합주의로 전이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사회에서 사회조합주의(국민주의)가 그 맹아기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김호진·이강로, 1991).

김상균은 한국이 당면한 경제와 사회목표간의 조화, 민주화와 정치적 안정달성을, 사회적 통합과 연대 증진, 그리고 조국통일이라는 본질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상균, 1992 : 429-43).

최경구는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증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에서는 조합주의복지국가의 가능성은 있으며, 성장복지의 균형, 주변 열강과의 관계, 통일과 관련하여 사회조합주의로 나가는 대안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최경구, 1993 : 193-265).

이들의 주장이 '98.2.6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에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신뢰도의 현재적 가치는 더욱 더 클 것이다.

2) 도니슨(D. Donnison)의 사회적 합의 모형에 의한 한국상황 분석

지금까지는 주로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에서 한국의 사회적 합의 모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과연 한국의 역사발전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만 그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적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와 그간 조합주의등으로 해석되어온 Corporatism에서 통상적으로 주장되어온 내용들을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니슨(D.Donnison)의 견해를 따르면서 한국적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도니슨은 특히 민주적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분석하여 보면 ①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②국가의 적극적 개입, ③중산층의 적절한 형성, ④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현상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Donnison. D 1982).

경제성장의 의미는 성장 그 자체가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추진력의 자원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복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가도에 있어야 복지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바로 소득의 불균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적 임금(Social Income)이라는 인식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임금이란 인간의 욕구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서비스들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가의 징세기능에 의하여 금전적으로 충당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산층의 적절한 형성에 관하여는 중간정도의 기술력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회복지 제공을 둘러싼 첨예한 분쟁 속에서 사회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평등화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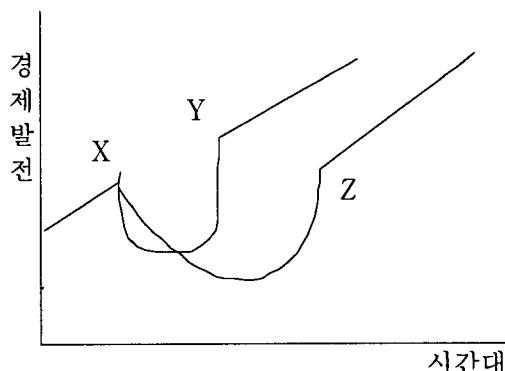
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는 경제적 위기, 정치적인 변란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투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실업이나 사회적 갈등 또는 재산조사방식의 복지시스템으로 퇴행하는 정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국가의 적극개입과 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는 기실 같은 주장의 양단을 본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에 대한 일반 납세자, 기업등 사회주체의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가 전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Donnison은 중산층과 노동조합이 이 합의에 이르는 통로라고 보았던 것이다.

(1) 경제성장

우선 경제 성장 측면을 보면, IMF 이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이루어낸 경제성장이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IMF 이후 고조된 위기의식이 이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을 상기하면 이 경제위기가 분석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외환사정이 점차 호전되고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이 결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논자들도 다수이므로 분석에 큰 무리는 따르지 않으리라고 본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의 극복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성공적 수행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강명세, 1998, 84).



*자료출처 : 강명세 1998, p.84

(그림 3) 눈물의 계곡

<그림3>에서 X는 현재 외환위기 속에 한국이 처한 상황이다.

X에서 Y 또는 X에서 Z로 진행하는 과정에는 소위 IMF관리 체제를 의미하는 눈물의 계곡(Valley of Tears) 또는 고통의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단단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고통을 이겨내면 XY라는 짚은 고통만 감내하면 되지만 반대로 노사정협약이 강도가 약할수록 XZ와 같이 고통의 계곡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과거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이루어온 경제성장은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서방 세계에 까지 널리 알려진 것이다. IMF 사태 이후 실업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급조하고자 하는 예산이 10조를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의 성장폭은 이제 절대수준을 넘어선 것만은 분명하다(노동부, 1998).

(2) 국가의 적극적 개입

중화학공업육성기(1943-79)를 거치면서 무역규제, 차별적 금융지원 등의 규제수단을 통하여 시장을 통제해온 것은 한국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이성규, 1997). 물론 국가개입주의의 성공도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인을 국가정책이외에 시장에서 찾는 신고전파이론가(I.Little, 1979 ; B.Balassa, 1981)와 한국을 벗어난 국제적인 환경에서 찾는 이들(Cumings,B, 1987)은 국가 개입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신고전파이론가들의 주장 속에서도 선택적 국가개입이라는 개념은 많이 발견되며,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기업의 국제환경 적응력 배양도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D.Rodric, 1995).

커밍스(Cumings), 굿만과 펭(Goodman & Peng)은 한국과 대만을 “관료적, 권위적 산업체제”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각각 ‘Yen Bloc’과 ‘일본중심의 동아시아 모델(Japan-focused East Asian Model)’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료적, 권위적이라는 단어에서 국가의 개입을 유추해내기는 어렵지 않다(이성규, 1997 ; Goodman & Peng, 1995 : 52-53).

경제성장과 국가개입에 대한 논의를 반대방향에서 바라보면, 복지지출을 피하기위한 개입 즉 복지면에서는 ‘부(負)의 국가개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시켜놓고 경제성장에 치중했다는 역설적 결론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의 사회보장 지출비의 대 국민소득 비율이 15%~40%인데 반하여 한국은 1.9%('94기준) 정도에 끓어 놓고도 ‘무사할’ 정도로 한국정부의 정책통제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중산층의 형성

4.19혁명이후부터 발전되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3년 현재 농촌 및 도시 빼띠부르주아와 전문기술종사자가 47.7%, 노동자계급(샐러리맨, 생산직 노동자층, 비생산직 노동자층, 실업자)이 51.4%로서 계급적 분화추세를 보이고 있다(서관모, 1984 : 48.94). 그리고 '96년 한국의 평균적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부천시민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조사에서는 74%가 자신들을 중류층(중상, 중하, 하상, 하하 4부류중 중상과 중하층)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부천시, 1996). IMF 충격을 받기 이전에는 이미 한국인들의 절반이상이 중류층이라는 자기인지속에서 사회의 평등을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하겠다.

Donnison의 견해에 따르면 중산층과 더불어 노동조합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므로 이 관점에서 한국의 시민의식과 노동운동을 축약하여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난 노·사·정 합의 이전에 이미 '96년 4월 24일 대통령의 "신 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난 후 그해 말 노동법 폐동과 이듬해 3월의 법 재개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노사정 세 주체 중 열세에 놓여있던 노측의 영향력이 일단 통과된 노동법을 곧바로 개정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간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측과 균형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노사개혁편찬위원회, 1997).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6.29선언의 한 동인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무실 밀집지역의 사무근로자들이 '96년말의 노동법 폐동 때의 한 중심세력의 뿌리였음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성규, 1997). 6.29선언이 정권적 차원에서 행하여진 집권자들의 대중조작이든 국민들의 저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해진 정치적 양보이든, 중요한 것은 국민 대중에게 인식된 정치적인 억압상황에 대하여 반응한 양태와 그 양태를 보인 주체들의 성분이다. 그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산발적으로 명동 등 도시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이전처럼 대학생이나 공장 근로자들이 아니고 주로 증권회사, 은행 등에 근무하는 대졸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시위참여는 학생시위 일색의 반정부운동과 이들과 연결된 공장노동자들이 벌여온 공장지대 중심의 노·학 연대투쟁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즉 도심의 화이트 칼라노동자들이 직접 시위대열에 참여함으로서, 반정부 저항 운동의 외연이 넓어지고 시민운동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집권당 등에서 이들의 참여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이성규, 1997).

6.29가 시민의식 또는 노동자의식이라는 관점에서 갖는 의미는 한국의 역사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다. 일제하에는 노동자 의식이 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면 6.25이후에는 반공과 폐허의 복구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의식은 196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4.19혁명과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 계획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4.19혁명은 질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전기를 마련하였다면,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은 양적인 측면과 구체적 측면에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결과 인권의 확립, 합리적 사고 및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김어상, 1983 : 45). 그러나 4.19 당시에 노변에 몰려든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명분과 실제에 공감하면서도 물을 떠주거나 쫓기는 학생

들을 숨겨주는 등 주로 소극적인 참여행태를 보였으며, 사임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하여 눈물지으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등 중세적 가치를 청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6.29 당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벌인 운동은 '60년대 한국 노동(시민)운동의 질적인 이정표를 세운 4.19보다도 시민 의식의 확산이나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복지지출의 증가 추세

세계의 어느 정부도 견고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는 사회 복지 지출을 삭감하기가 힘들게 마련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1921-39기간과 1975-현재까지 비교적 높은 실업율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관대한 복지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성규, 1997).

한국의 경우 상술하였듯이 비록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매우 저조하지만 매년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약 30%정도를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 사태이후에 발생한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비가 급조되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그 추세를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최근에 사회복지지출을 삭감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어가는 과정들을 검토하면서 향후의 추세를 가늠해보는 것이 유의미 할 것이다.

한 사건은 바로 1993년에 정부가 사회복지사 증원계획을 취소하려고 시도했던 일이다.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균검절약운동 지침이 떨어졌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련 대학생·교수들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 정부는 그 시도를 취소하고 말았다(이성규, 1997).

두 번째는 1994년 여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기업을 규제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업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안이다. 이 당시 정부는 의무고용율 2%를 1%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하여 1995.9.2 개최될 당정회의에 상정하기까지 하였으나(산업자원부, 199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부모회, 부산장애인 연합회 등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철회하였다(이성규, 1997).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1998년에 또다시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를 들고나왔으나 역시 장애인 한가족협회, 지체장애인 협회등 장애인계의 광범위한 반발로 취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방향의 상징으로서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작고 강한 정부를 회구하면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경부로 통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문을 보면 보건사회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바꾸어 복지문제에 무게를

더 준 느낌을 주고 있으며 청와대 내에 사회복지 수석실을 신설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또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였으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위의 사실들로 부터도 한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통설에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로서 절대액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한국의 복지 지출의 톱니효과(Ratchet Effect)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인 조건, 중산층의 형성, 국가의 개입 그리고 복지지출의 확대 경향 등 모든 부문에서 한국 상황은 도니슨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단계에서도 이미 '96년부터 형태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형성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98.2.6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IMF 자금지원이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아 도출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한국사회는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성취시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 합의 모형이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구조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능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III. 장애인 고용정책의 형성

1.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의미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한국 전쟁 후에 발생한 전상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 소득과 고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장을 1961년에 마련하면서 가시화 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 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들 즉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가 1963년도에 뒤따르게 된다. 이 두 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해주어 같은 유형과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는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다(이성규, 1997 : 2). 불행히도 이 선택주의적 정책논리로 말미암아 장애 자체에서 도출되는 복지수요에 보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보호로 넘겨졌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 장애인들에 대한 월20여만원과 현실성 없는 자립지원금 1,000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내놓은 대책의 거의 전부이며 전체 장애인구의 1%도 못되는 장애인들만이 수용될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이익섭, 1990 : 103).

장애인들의 통상적인 실업률은 비장애인들의 10배가 넘어 왔다. 이 상황에서 고용이 될 경우

에는 “전부”를 얻는 것이고 직장이 없으면 가진 것이 “전무”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불안정한 양극화 구조 속에 장애인들은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 저임금, 빈번한 이직, 인권유린 등 비장애인의 고용내용과 많은 부분이 상이하고 열악하지만(이성규, 1997 : 114-164), 장애인 자신들에게는 고용이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주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한다(S.Sally, 1993 : 84-108).

본 연구가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구조 속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이 중대한 의미가 내포된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사회문제의 중심에 놓고 본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논리적으로 기여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그동안 유지돼왔던 장애인 고용구조에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장애인 고용문제도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장애인 개인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98.2월 현재 의무고용율 2%의 약 1/4정도 수준인 0.46%정도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는 저조한 장애인 고용율(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8a)은 지난 30년동안 성장우선정책에 밀려 발전하지 못한 한국의 미미한 복지프로그램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된 경제위기는 다음과 같은 특이현상을 낳으면서 장애인들을 점점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첫째, ‘98년 2월의 경우 구인업체는 전월대비 36.3%, 구인수는 전월대비 38.3%가 각각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단의 중부사무소의 경우에는 앞선 실적이 30.9%정도 감소하였으며 확정율도 63.1%감소하였다(공단 중부사무소, 1998.3월 인터뷰). 이러한 경향은 공단의 모든 지역사무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8.1월부터 장애인 해고 회피노력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부탁을 하고 있으며(공단 인천사무소, 1998.3월 인터뷰) ‘98.7월부터는 전 직원이 ‘총력구인체제’로 돌아서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구인확보에 나서는 등 원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업의 부도가 가시화 되고 기 취업장애인들이 대량 실업상태에 이르면서 공단의 상담창구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사실 그 동안 대기업 등에 고용되었던 장애인들은 대부분 경증장애인이며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장애인들 보다는 소아마비 장애인등의 지체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증장애인들이 대거 재취업상담에 임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부도 또는 구조조정시 비장애인들과 함께 실직 또는 해고되었다고 분석이 된다.

셋째, ‘90년 공단 설립 시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3D업종 등 단순노동 업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었었다. 그 후 삼성 등 대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사무·관리직에 특채하기도 하였으며, 금융기관등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를 두고 장애인계에서는 단순히 고용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의 형태나 내용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퇴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성이 심하게 해손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력파괴 현상이 장애인고용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저부가가치 산업의 취업이 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용역업, 경비업 등 인력파견업이 합법화되면서 고용안정성은 다소 낮으나 이러한 분야에서 일시적인 취업의 증가현상이 발견된다(공단 중부사무서, 1998.3월 인터뷰)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형성과정

경제성장정책에 밀린 선택주의적 복지정책기조는 아직까지도 크게 변한 것이라 추론하기는 힘들다. 다만,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1981.6.5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86년엔 국립재활원을 개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가 생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오혜경, 1997 : 85-92). 그 후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법률 제4219호)하게 되면서, '81년의 심신장애인 복지법에서의 기초복지와 더불어 외형상으로는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인생주기에 맞는 재활의 체계가 마련된 듯이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는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게 된 것은 1988.12 제144회 정기국회에 평민(이철용의원 외 83인), 민정(양경자, 장영철, 장경우의원 외 57인), 공화(이병희의원 외 34인), 민주당(이인제의원 외 57인) 4당이 각각 심신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발의하면서이다. 그 이후 1989.2월 제145회 국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1989.5.20-1989.12.1 기간동안 국회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8차에 걸친 심사를 마친 결과 1989.12.6 여야 4당의 제출안을 모두 폐기하고 수정된 단일안을 보고 의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일안이 1989.12.11-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1989.12.16 제14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다(이채필, 1990).

평면적으로 보면 의원입법으로 시작된 법이 약 1년정도의 국회심의를 거쳐서 입법이 완료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과정을 좀더 분석하여보면 몇가지 특징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

1) 외부적인 영향

법제정의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의 국제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하나는 1976.11.28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자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다.

즉,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해를 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에 대한 국민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무드가 점차 확산되면서 '80년대 중반에 이미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1984.10.11 이미 정정훈의원 외 80인이 심신장애인 고용

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이채필 1990 : 499).

사실 1980년대의 경제 상황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채 및 실업률로 인하여 임금 증가율 억제, 중화학공업 합리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보수적인 안정화 대책을 서두르던 입장이었다. 정부예산도 1981년에는 21.9%가 줄었으며, 1984년에는 예산증가율이 0%였을 정도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물론 1983년부터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리기는 했지만 장애인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정도로 정부내에서 자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이다(이성규, 1997 : 90). 이러한 때에 심신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심신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대한 발의가 있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부의 체면치레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비자발적인 반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하나의 사건은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다. 올림픽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기 2년 정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될 수도 있으나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것은 '84.1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올림픽 무드 속에 있었다. 정부가 세계장애인들이 몰려들어 한국의 실상을 체험하게 될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감지될 수 있었다(오혜경, 1997 : 87 ; 이채필 1990 : 499 ; 이성규, 1997).

2) 장애인계의 성장

한국의 장애인계는 '70년대 초기만 하여도 장애인의 대학입학 자체도 거부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파급될만한 여론을 주도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후 대학입학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소규모 인권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3년에 있었던 '장애인 권리선언'인데 이는 지체장애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정립단'에서 장애인들의 우선취업권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였다(대학정립단, 1993). 이는 91년에 공포되는 장애인고용법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된 내용인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매우 비슷하나 당시에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1984년 도로의 턱을 넘지 못하는 훨체어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한 김순석씨 사건으로 전국의 대학생장애인들이 합동위령제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운동이 체계화된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은 김씨의 자살이 장애를 입은 개인의 자살이 아니고 사회적인 장애가 불러일으킨 간접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며 장애와 사회의 물리적·심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최초로 조명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장애인 복지뉴스, 1989.12.8).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숙된 장애인계의 의식과 운동역량은 '91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입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올림티 등에 소속된 젊은 장애인들은 '88년 4월부터 '89년 중반까지 명동성당, 국회의사당 등에서 4-5차례정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

성을 여론화하는데 성공한다. 장애인운동은 그후 '89.11.11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국특수교육학과 학생연합회, 사회사업과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 등과 연합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는 결실을 맺는다. 이 공동대책위의 활동은 각 정당의 여론주도층과 담당자들에게 장애인계의 욕구를 반영시키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매우 다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장애인 그룹들이 명동성당 등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가 하면 '98.10.30-11.9 기간동안 애3당 당사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장애인 복지뉴스, 1989.11.7). 상술하였듯이 4당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 문제를 다룬 법안을 국회에 동시에 제출하게 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장애인계가 그만큼 동시다발적으로 법 제정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표출시켰으며 이 노력이 반영되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정부의 역할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영향력과 장애인계의 성숙한 목소리도 중요하였지만,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83년에 있었던 장애인의 요구 등이 묵살되고 그 후에 '80년대 후반에 전개된 장애계의 요구를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83년의 경우 '88년을 전후로 전개된 장애인 운동보다 목소리가 작고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미 '87.12 집권여당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가 채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집권당 후보의 선거공약은 야당과는 다르게 당정간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당안이 국회에 각각 제출된 후 단일안으로 굳어진 후에는 세부적인 작업은 주로 노동부에서 이루어졌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창출해내지 못하였으며 노동부의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담 인력의 실질작업에 대한 법적인 추인을 해주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의 실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된다(이성규, 1997).

IV. 결론 : 노사정 사회적합의가 장애인고용정책에 주는 함의

1. 합의구조의 유사성

'89.2.6 노사정합의가 단순히 경제위기라는 계기성을 갖고 돌발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역

사적 연원이 있음은 이미 설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구조가 전제되는 사민주의가 정치·사회적으로 한국에 적용가능하지에 대한 단순분석 뿐만 아니라 도니슨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들에 입각한 역사적인 분석도 이루어졌다. 그 후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사회의 노사정 합의구조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합의구조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경제성장문제이다. 이는 두 문제 모두가 같은 차원에서 관련을 맺는 관계, 즉 장애인 복지나 일반적인 복지수요나 모두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외부적인 영향이다. 노사정 합의가 IMF라는 국제적인 영향을 크게 입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법은 '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와 '88서울 장애인 올림픽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두 경우 모두 국제적인 환경이 충분조건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정도의 촉매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셋째, 중산층의 성장이다. 사회문제해결이나 복지프로그램의 확산 등에는 중산층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한국의 중산층이 어느 정도는 이에 부응할 정도로 성숙하였다는 분석을 하였다. 장애인계 역시 젊은 장애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80년대 후반에 매우 역동적인 활동을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노동법 파동을 전후로 한 노동계의 활동과 매우 흡사하다. 장애인계의 이러한 여론 수렴 및 행동능력은 사회전반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역할 같은 것을 장애인계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넷째, 정부의 개입은 두 경우 모두 강력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 구조를 시도하였던 노사개혁위원회 출범 이후의 활동 등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정부는 법안의 작성 및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작업을 주도해왔으며, 국제적 체면 때문이든 아니면 장애인계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든지 간에 당정합의를 통하여 집권여당 대통령 후부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이미 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다섯째,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 문제이다. 한국의 복지지출이 그 절대액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미한 것이 사실이어서 비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긴 시간대별로 볼 때, 복지지출 예산이 증가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 역시 고용문제 등에 관한 지출 등을 감안하면 소폭이지만 증가추세에 있다(1991년 장애인복지/사회보장이 1.9%이었는데 1996년에는 2.1%임). 그러나 이 문제는 절대액이 미미한 복지지출 속에서의 장애인복지비용문제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비용은 제수당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감안하면 더 줄어들기는 쉽지 않음을 앞에서 검토하였다.

지금 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정책 역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

속에서 탄생하였다. 다만 생성과정이 장애인계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 보인다. 법제정 당시 공청회 등에서도 침묵해 왔고, 전술한 1998년 전경련의 간접적인 입장표명 이외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법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경총 등 사업주 대표들의 의견을 여러 형태로 반영하였으며 부담기초액 산정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차관)에도 경제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어 액면 그대로 사업주들의 입장이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장애인계를 자극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진다는 점에서 노사정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고용정책은 노사정 3주체간의 합의구조의 하위개념인 장애인·사업주·정부(障事政)간의 합의구조 속에서 탄생하고 또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사정의 '사'는 사용자(使用者)의 의미이나 장사정의 '사'는 사업주(事業主)의 의미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인들은 순수한 경제동기에 의한 고용이라기보다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기위한 것이다.

물론, 노사정 합의는 파업등의 공격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세력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장사정 합의와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는 대립적 주체들 간의 합의이외에도 중산층, 경제성장과 예산 등의 변수에 의하여 종속되므로 양자를 같은 운동양식을 상정하여 분석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2. 사회적 합의의 장애인고용정책적 함축의미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제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보기 위하여 그 제도의 생성원리를 반추해 보았다. 이는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틀과 추진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론에 입각한 것인데, 이를 '98. 2. 6 사회적 합의의 구성원리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 것이다.

이러한 분석자체가 갖는 의미는 정책집행이라는 실천적인 측면에 적용가능 할 때 배가될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부와 공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장·사·정(障·事·政) 합의구조를 적용시켜 보겠다.

첫째, 구인업체의 현저한 감소에 대하여는 '98. 2. 6 노사정합의 후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기금, 생활안정기금, 공공취로사업기금, 자원봉사요원 활용 등에 투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노동부, 1998b). 특히 이들 복안들 중 창업기금 지원 등은 정보·통신분야를 포함한 첨단 분야의 벤

처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리는데, 장애인들의 이동능력을 감안할 때 적합한 고용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담당 부서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요원 모집활용 역시 경증장애인들이 지원 가능한 분야이다.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본격적인 취업이전에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취업전 훈련효과도 있음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 직접 障·事·政 3주체 중 事(기업)를 지원하여 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특히 경제난을 맞아 자금압박이 심한 기업에게는 더욱 돋보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우선 무상지원도 편의시설 설치비의 1/3을 지원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으나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 복지공장에 대한 응자도 현재 시설투자의 50% 만을 응자하는데 담보설정 후 시설투자비 100%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고용 지원금(장려금)의 정산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지급해주는 방법도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경증 장애인들이 취업창구에 많이 몰려드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여도 대다수 피고용장애인의 경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주로 재취업을 문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역시 최근 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계획중인 재훈련 기관의 확대전략과 연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障·事·政 중 '障'의 능력을 개발하여 3주체간의 균형을 잡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내방장애인들을 학력, 장애정도 등에 따라 전문대학과 대학시설을 이용한 (재)훈련대상, 일반훈련원 (재)훈련대상, 장애인훈련기관 훈련대상 등으로 면밀하게 분류하고 경증장애인들은 대학과 일반훈련기관등과 연계시켜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해진 훈련기간 제도를 탈피하여 장애인별로 개별화 하여 수요자 측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정부의 역할을 보면 위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등이 모두 정부의 기능이지만,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취업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정신지체인등에 대한 직역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나 이 노력이 취업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태이다. 다만 직업체활종합센터의 사업 중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시키는 기능이 들어 있어 향후의 중증장애인 취업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b).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공단을 노동부 산하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자는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勞·使·政 3주체 중 '政'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는가에 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공단 설립 이전에는 복지부산하의 각종 복지기관에 수용되어 있었거나 그 기관들을 이용하여 왔다. 그리고 100개소가 넘는 보호작업장에 약 2,7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 아직도 복지부산하의 복지관에서 소일하는 것도 사실이다(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들의 복지마인드가 노동부 관계자들보다 더 발달했으리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마인드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서는 기초재활 혹은 의료재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며 근로기준, 산업안전등 고용현장의 연관 분야는 노동부와 비교하면 그 전문성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의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여러 연관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다른 이슈들 즉 장애인 특수교육, 여성교육, 중고령자 고용, 청소년 문제 등의 소관부처가 정해졌던 행정논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복지마인드에 관한 논리라면 위의 모든 기능이 복지부로 이관되어야만 한다는 논리로 귀착되어 무리가 따른다(이성규, 1998). 더욱이 이 문제는 행정부내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제기된 것이 아니며, 장애계 일방에서 공단을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결론을 먼저 정치적으로 밝히고 명분을 뒤에 준비하는 등 미성숙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의 의견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강요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장애인신문 : 1998. 3. 16; 장애인복지신문 : 1998. 3. 20) 그룹조직화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간추려 말하면 복지부나 노동부나 하는 논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의 탄생원리였던 障·事·政 3주체의 합의정신을 더 잘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사실 이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政'은 '事'의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한 산업자원부 혹은 재경부 일 수도 있다. 이를 부서가 갖는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장애인 고용문제를 가장 능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영자 협회(Swedish Employers Federation)가 자체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에 열성적인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는 자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자는 논의도 일고 있다. 심지어는 장애인고용으로 혜택받을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공단의 예산을 장애인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평고있는 장애인 그룹들도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자영업에 대한 지원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기업들은 일반고용을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갖게된다. 나아가서는 기업의 인력활용과 별개의 축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이는 자영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 납부를 거절할 명분도 갖게되며 이 사업이 기업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지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나면서 장애인고용정책에 재정적 위기가 올 것이 예상된다(노동부, 1998c). 또한 일반고용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다수 장애인들이 "구멍가게 형태의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의 특수화와 일탈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장·사·정 합의구조의 제도화와 체계화문제이다. 현재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국가적 차원의 합의체로는 노동부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노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예산청 등의 장애인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들, 노총, 경총의 담당자들, 장애 각 유형별 대표자들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노동부 차관으로 되어있어 행정 각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단순히 노동부 차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변화에 대한 주인을 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자연히 장애인이 취업한 이후에 받는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혹은 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권리 구제는 장애인들이 사업 주와 직대관계를 맺으면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갖는 사회적인 힘의 한계와 법 절차에 대한 접근력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피해구제를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평등권 보장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현실적인 구제행위를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 협의기구는 노동부 차원의 자문기구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구의 관장은 최소한 부처간의 조정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총리실 이상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업무의 관장 부처 등에 관한 논의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표류하는 이유도 힘있는 합의체에 의한 조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합의기구는 또한 최소한 광역 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조직을 완비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합의구조를 뿌리내리게 한다면 장사정 사회적 합의정신이 장애인들의 실제 생활에도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세. 1998. "IMF 위기, 한국모델의 파탄, 그리고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 모델은 실패했는가. 한국정치연구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 1998. IMF 관리체제하의 정책동향과 과제.
- 김상균. 1992.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어상. 1983. "한국사회와 노동자의식". 노동자운동과 산업민주주의. 서울 :민중사.
- 김호진, 이강로. 1991. "조합주의 관점에서 본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변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움.
- 노동부. 1998. 3. 18. 국정보고.
- _____ 1997.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
- _____ 1998b. 실업대책에관한 내부자료.
- _____ 1998c. Working Paper 공단 사업이관 문제 검토.
- _____ 1998d. 실업 예산 추계.
- 노사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노사개혁 21세기 새 동반자.
- 노사정위원회. 1998. 합의문.
- _____ 1998a. 위위원회 활동자료.
- 박세일,선한승. 1991. 노동운동 이념연구 - 국제 비교론적 관점-. 한국노동연구원.
- 부천시. 1996. 자치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조사.
- 서관모. 1984.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 분화. 서울 : 한울.
- 오헤경. 1997. 장애인복지학입문.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이성규. 1997. "Disability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Ph.D.diss. London : LSE(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_____ 1998. "경제위기, 사회정책 그리고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 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익섭. 1990. "현행 장애인복지의 제 과제". 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채필. 1990.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와 수용". 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정정길. 1989.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

- 최경구. 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서울:한나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연계고용제 대상 직업재활시설 현황.
_____. 1998. '98 예산서.
_____. 1998a. Working Paper (고용촉진국).
_____. 1998b. 내부자료.
_____. 1998c. '97 예산집행현황.
_____. 1998d. '97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_____. 1998e. 국회 답변자료.
- 高田一天. 1994. 장애인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이채식 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Balassa, B. 1981.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Developing Economies". *WorldBank Staff Working Paper*. No. 464.
- Bolderson. H. 1991. *Socil Secur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London:Jesica Kingsly Publishers
- Cumings, B. 1987.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 Industrial Sector,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Dey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Cornel University Press.
- Donnison. D. 1982. *The Politics of Poverty*. Oxford : Martin Robertson.
- H.J. Kwon. 1995. "The Welfare State in Korea :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Ph.D. diss. Oxford Univ.
- Lehmbruch, G. & P.C. Schmitter, 1982. *Patterns of Corporatist Policy Making*. London: Sage.
- Little, I. 1979. "The Experienceand the Course of Rapid Labour Intensive Development in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 and the Possibilities of Emulation." ILO Working Paper WPII-1. Asian Employment paper, Bangkok.
- Middlemas. K. 1979. *Politics in Industrial Society*. London:Andre Deutch.
- Rodrik, D. 1995. "Getting Intervention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ch." *Journal of Economic Policy*. April,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Sally. S. 1993. *Normal Life: A Study of War and Industrially Injured Pensioners*. England : Avebury.
- Schumiter. P. 1974.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Review of Politics*. 36.
- Smith. R. 1989. "The Economics of Job Displacement." in *Disability and Labor Market*, Berkowita. M. & M.A. Hill edt, New York : ILR Press.
- IMF. 1997. 한국과의 합의문.

[인터뷰 기관 및 인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획예산담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부사무소 직업상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사무소 직업상담원.

한국 민주노총 관계자.

6.29 당시 민주정의당 관계자.

Abstract

**Social Consensus among Two sides of Industry and the Government
and its Implication for Disability Policy**

Lee, Seong Gyu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Korea's social consensus among two sides of industry and government on Feb. 2 '98 was not just temporary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nancial fund.

Some arguments o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democracy and corporatism and D. Donnison's perspective on Democratic Socialism are employed in search of an appropriate social consensus model for Korean situation. In the process of analyzing Korean situation in historical contex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re is embryo of stable social consensus beyond the level of tentative soci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e next step applying the social consensus model to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levels up empirical and theoretical validity of this research. It casts some implications for disability labour market which demands another kind of social consensus among people with disability,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These implications include a desirable solution for hard lives of un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y in economic difficulties and current policy issues facing Korean government.

Tel : 0342-711-5588 / 018-217-0712

Fax : 0342-718-4123

E-mail :